

2027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안내

1. 대상

- 가.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2027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
나. 202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(2026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도 신청해야 함)
※ 유아교육과/초등교육과/특수교육과 교육실습생 포함

2. 기간

~ 2026. 9. 16.(수) 17:00 ※ 기간 엄수

3. 방법

「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대상자확인」

4. 절차

가.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

나. 신청여부: 『실습』, 『미실습』, 『교직포기』 중 선택

※ 『미실습』 또는 『교직포기』를 선택한 경우: 반드시 사유 기재

(교직과정 포기: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 선발자에 한함)

※ 교직복수전공 실습생의 경우 학생 유레카 입력이 불가하므로 교직부로 연락하여
실습여부 전달

다. 교육실습 신청 결과 최종 확인: 「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」

※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5. 교육실습 기간

가. 4월: 2027. 4. 5.(월) ~ 4. 30.(금)/ 4주간

나. 5월: 2027. 5. 3.(월) ~ 5. 28.(금)/ 4주간

※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,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됨.

▶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(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)

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(개교기념일 포함)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이 경우 공휴일·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(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,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). 다만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(고시 제6조 4항).

※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

- 1) 실습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, 실습생 결근이 1일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.
- 2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, 실습생 지각 1회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를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임.

6. 교육실습 지도비

가. 본교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(15만원)은 본교에서 실습교로 일괄 납부

※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 납부 대상: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직복수 교육실습생

나. 실습교의 교육실습 지도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실습생이 실습교로 직접 납부

※초과분 납부 대상: 실습생 전원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직복수 교육실습생)

다. 2027. 3월 중 공지되는 '교육실습생 공지사항'을 통해 납부 기간 등 확인 필수

6. 유의사항

가. 교육실습 신청자는 2027학년도 1학기 해당 자격종별 “교육실습”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합니다.

나.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사항 발생 시, 교직부로 「교육실습 변경원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제출 기한: 2026. 11. 13.(금) 마감)

※ 「교육실습변경원」: 교직부 홈페이지(<http://teaching.ewha.ac.kr>) → 교육실습관련서식→ 변경원